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7년 3월 6일

나. 회부일자 : 1997년 3월 6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97. 1. 1시행)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간사와 서기의 직명을 개정된 행정조례와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간사와 서기의 직명변경
(제7조 제2항)

- 간사는 내무국장 → 문화관광국장
- 서기는 생활체육과장 → 문화체육과장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충청북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및 서기의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에 있어서 간사를 "내무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서기를 "생활체육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 부

-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내무국장” 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